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29
----------	-------

발의연월일 : 2026. 6. 30.

발 의 자 : 유용원 · 김소희 · 윤영석
김성원 · 김기웅 · 성일중
강선영 · 최형두 · 이헌승
김미애 · 서범수 · 이진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신속소요 제도’ 및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한 시범사업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경우에도, 소요 결정부터 시험평가 및 전력화에 이르는 전 과정(소요, 계획, 타당성, 사업, 시험평가, 전력화)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그 중 일부 과정을 제외하거나 병합하는 형태로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로써, 그 단축효과 및 선정대상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특히 최근 전쟁 사례에서 확인된 수명주기가 짧고 전장에서 대량 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 및 기술주기가 짧은 첨단 무기체계의 경우, 기존의 중후장대한 사업관리 절차를 일부 제외하는 형태로는 기술주기 및 발전속도, 소모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수명주기가 짧고 전시 대량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 및 기술주기가 짧

은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국방 획득 체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요결정 이전에 방위산업체 및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등의 상시 신청을 받아 신청자가 제안한 성능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우선 진행하고, 각 군의 소요가 발생하는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을 신설하고자 함. [제17조(방위력 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각 항 개정 및 제19조의 2(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 사전인증품 즉시 구매) 및 각 항 신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을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및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전인증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제19조에 따른 구매 또는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8조”를 “제19조에 따른 구매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 사전인증품 즉시구매,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8조”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 사전인증품 즉시 구매) ① 방위사업청장은 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하여 소요결정 이전에 방위산업체 및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등의 상시 신청을 받아 신청자가 제안한 성능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우선 진행하고, 소요결정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사전 시험평가 등이 완료된 사전인증품 목록을 유지하며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 즉시 구

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조 후 사전인증 시험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 사전인증품 즉시 구매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은 제19조에 따른 구매 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9조에 따른 구매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 사전인증품 즉시구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제19조의2(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 사전인증품 즉시 구매) ① 방위사업청장은 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하여 소요결정 이전에 방위산업체 및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등의 상시 신청을 받아 신청자가 제안한 성능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우선 진행하고,

소요결정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사전 시험평가 등이 완료된 사전인증품 목록을 유지하며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 즉시 구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조 후 사전인증 시험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 사전인증품 즉시 구매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